

과천도시공사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지침

제정 2020.02.05. 지침 제18호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과천도시공사(이하 “공사” 라고 함) 시민참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고 함)를 구성하여 이용 고객 및 지역주민 참여 등을 통한 투명하고 열린 경영으로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공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제안할 수 있다.

1. 공사의 경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고객서비스 개선 및 향상에 관한 사항
3. 이용고객의 권리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공사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25명 내외 인력풀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공사 사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는 주관 부서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지역유관단체, 지역주민 및 이용고객으로 공사 경영에 관심이 높은 자로 공사 사장이 위촉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회의록 관리를 위해 간사 및 서기를 지정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된

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, 품위손상,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 한다.

1. 공사 경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및 자문이 필요할 때
2. 재적위원의 1/2 이상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
3. 기타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② 회의소집의 재적위원수는 15명으로 하고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우 재적위원의 구성은 추천된 인력풀 위원 중에서 추첨하여 구성한다.

④ 제1항제3호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전체 인력풀을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⑤ 회의 시 논의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 한다.

제8조(실비보상)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,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은 「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